

창의적이고 행복한 글로벌
예술인재 육성

계원예술고등학교 전·편입학 규정



2026년 3월 1일

계원예술고등학교

I .국내고등학생의 전·편입학 규정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5장 제22조에 의거 학생의 결원이 생겼을 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원활한 결원의 보충을 기하기 위함이다.

제 2 조(학생결원현황관리) 학생 정원 및 현원 현황을 학년별 계열별로 작성하여 교무실에 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 3 조(전·편입생 선발관리 위원회 구성 운영)

- ①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장은 교장,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은 업무관련성을 고려하여 교무부장(간사), 각 과 예술부장으로 한다.
- ③위원회는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각 과에 “전·편입학 실기 평가 위원회”(위원장 : 각 과 예술부장)를 둘 수 있다.

※ 전·편입생 선발관리 위원회는 필요 시 아래 사항을 심의한다.

- ①전·편입학 여부에 대한 심의
- ②학과 및 실기 평가에 대한 심의
- ③전·편입학 실기 평가 위원 위촉에 대한 심의
- ④기타 전·편입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 전·편입학 실기평가위원회

- ① 학교장 소속 하에 예술 각 과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3인 내외로 구성한다.
- ② 전공별 실무 위원회는 해당과의 예술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과의 전문교과교사로 한다.
- ③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본교의 전문교과 강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임무는 아래와 같다.
 - 실기 평가 방법 결정
 - 실기 평가 기준 결정

-실기 평가 및 성적 산출

-기타 전공별 실기 평가와 관련된 업무

제 4 조(전·편입 희망자 신청) 본교에 전·편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본교 행정실에 접수한다.(제 10조 참조)

[결원여부와 관계없이 연중 “가 접수”를 교무실에 할 수 있음]

※ 전·편입 가능 학년

미술과, 음악과, 무용과, 연극영화과 : 1학년~2학년 2학기 2월 말까지

※ 전입학 : 다른 학교의 학적을 가진 자가 본교에 전입함

※ 편입학 : 다른 학교에서 퇴학(자퇴)한 자가 퇴학(자퇴)한 다음 학년도 시작일 부터 퇴학(자퇴)시점 전일까지 본교에 입학함.

제 5 조(평가 시기) 결원이 발생할 경우 매 학기별로 학기 초(1차 지필평가 실시 전) 또는 학기말(2차 지필평가 실시 후)에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평가일이 정해지면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 6 조(평가 대상 및 선정) 평가 실시일 현재 접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전·편입생 선발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원수(정원 외 선발 인원 포함 가능)이내에서 전·편입학을 허가 하되 학기말 평가에서는 다음 학기 이전(기준일: 해당년도 8월 31일과 2월 29일)에 전출, 자퇴, 퇴학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 후보를 두어 추가합격 시킬 수 있다.

단, 실기성적이 **실기과락(70점미만)**을 받은 자는 전·편입학을 불허 할 수 있다.

제 7 조(평가) 전·편입학 대상자의 평가는 내신성적과 전공(실기)성적으로 한다.

① 미술과: 고등학교 내신성적 40%(40점)와 전공(실기)성적60%(60점)를 합산한 총점 우수자 순으로 선발한다.

② 음악과·무용과·연극영화과: 고등학교 내신성적 20%(20점)와 전공(실기)성적80%(80점)를 합산한 총점 우수자 순으로 선발한다.

내용 학과	고등학교 내신성적	전공(실기)성적	계
미술과	40점	60점	100점
음악·무용·연극영화과	20점	80점	

③ 내신성적 산출 적용 학기

1학년 1학기 전형: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성적으로 한다.

1학년 2학기 전형: 고등학교 1학년 1,2학기 성적으로 한다.

2학년 1학기 전형: 고등학교 1학년 1,2학기, 2학년 1학기 성적으로 한다.

2학년 2학기 전형: 고등학교 1학년 1,2학기, 2학년 1,2학기 성적으로 한다.

④ 내신성적 산출 방법

각 학기의 국어교과(군), 영어교과(군), 사회교과(군)에서 교과(군)별 가장 성취도가 높은 1개 과목의 성취도 환산점수를 [표 1]에 적용하여 내신성적을 산출한다.

[표 1] 내신성적

학과	계산공식	총점
미술과	$\frac{\text{이수한 학기의 국어과목, 영어과목, 사회과목 환산점수의 합}}{3} \times 8$	40점
음악·무용·연극영화과	$\frac{\text{이수한 학기의 국어과목, 영어과목, 사회과목 환산점수의 합}}{3} \times 4$	20점

1. 성취도를 A=5, B=4, C=3, D=2, E=1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구한다.

2. 학기가 끝나지 않아 과목별 성취도 산출이 어려운 경우 그 학기의 중간고사 성적으로 성취도 환산점수를 아래표와 같이 환산한다.

원점수	90점 이상	80점~89.9점	70점~79.9점	60점~69.9점	59.9점이하
성취도	A	B	C	D	E
환산점수	5	4	3	2	1

⑤ 1학년 1차 지필평가 이전에 전·편입 전형을 할 경우 내신성적은 중학교 2, 3학년 성적을 제 7조 4항에 의거 산출한다.

⑥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실기점수를 우선한다.

제 8 조 (정원 내 전·편입학) 신입학 이후 정원 내에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정원 내 전·편입학 학생의 모집단위는 신입생 전형요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9 조 (정원 외 학생 전·편입)

- ① 재입학 : 대상자 전원
- ② 특례대상자 : 해당 학년 정원의 2% 이내 (별도 규정 참조)
- ③ 국가유공자 자녀: 학생정원의 3%이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 10 조(절차)

전학용 재학증명서 발급(재적학교) ⇒ 전 가족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 재학증명서 1부 등 제출서류(아래 제출서류 참조)를 구비하여 본 교 행정실에 접수 ⇒ 실기시험 ⇒ 전·편입학 동의서 발급(본교) ⇒ 재적 학교장의 전학 허락 및 전출 수속(재적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및 출력물, 건강기록부 이송) ⇒ 전입학 수속(본교)

[제출서류]-- 본교 홈페이지의 전입학안내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 ① 재학증명서(전학용) 또는 제적증명서(편입생)
- ② 주민등록등본(전 가족 등재)
- ③ 전·편입학 원서와 수험표 및 접수증 --- 첨부 4~5쪽
(전·편입생용, 특례자 일반귀국자도 제출, 출력하여 사진부착)
- ④ 서약서(출력하여 제출) --- 첨부 8쪽
- ⑤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Ⅱ 1부
- ⑥ 재학 중인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표
- ⑦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첨부 9쪽

[추가 제출서류] - 해당자

- ①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1학년 1학기 1차 지필평가 이전 전형인 경우)
- ② 국가유공자 자녀 :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1통

[특례대상자, 일반귀국자 제출서류] --귀국자 전·편입 규정 참조

제 11 조(등록) 전입확정 기준 7일 이내에 등록하도록 한다.

전형료: 70,000원

Ⅱ. 귀국자 전·편입학에 관한 규정

제1조(특례 귀국 대상자와 일반 귀국자의 구분)

① 특례귀국대상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② 일반귀국자 : 외국에서 수학한 학생 중 특례입학대상자 자격기준에 미달된 자

제2조(서류 심사를 통한 학력 및 학년 인정)

①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한다.

②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학교의 최종 재학학년에서부터 이어서 외국학교의 재학기간을 우리나라의 학제에 맞추어 계산한다.

- ③ 9월 학제인 경우,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 중복될 때는 귀국 후 국내학교 배정시 한 학기를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 시에는 국내학교 배정시 한 학기를 내려 학년을 배정한다.
- ④ 어학연수(ESL)는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ESL반(과정)에서 정규 교육과정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하고 성적이 산출된 경우에는 학력 인정이 가능하다.
- ⑤ 외국학제가 10년~11년인 경우, 외국에서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해당 학년에 편입학 시킨다.
- ⑥ 국내 학생들은 당해연도 수업 일수의 2/3이상을 출석하여야 해당 학년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학년 진급을 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학업 공백이 발생한 학생은 서류심사에 의한 학년 배정 시 국내에서 계속 수학한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년을 결정한다.

[제출 서류]-- 본교 홈페이지의 전입학안내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1. 특례대상 귀국자

- 가.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각국의 주한 영사관에서 영사확인)
- 나.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증명서
(외국가기 직전의 국내 최종학력 증명서)
- 다. 국내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같은 학교급으로 편입학하는 경우에만 제출)
- 라. 출입국 사실 증명서(부모, 학생) - 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 마.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
- 바. 외국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부모, 학생)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는 부모 및 학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 부모의 체류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함
- 사. 전·편입학 원서와 수험표 및 접수증--- 첨부 4~5쪽
- 아. 전·편입학 신청서(특례자, 일반귀국자)--- 첨부 7쪽
- 자. 서약서--- 첨부 8쪽
- 차.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첨부 9쪽
- 타. 예방접종 증명서(지자체, 보건복지부 발행)
- 파. 제3국 수학 인정서 : 해당자만

- (학생이 부모체류국과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체류국 재외
공관장이 부모 체류국이 아닌 제3국 수학을 인정하여 인정서를 발급)
 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 **해당자만**
 (외국인, 한국국적이 상실된 외국국적자, 외국시민권자)
 거. 국내거소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 **해당자만**
 (국내주민등록이 말소된 외국영주권자)

2. 일반귀국자

- 가.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각국의 주한 영
사관에서 영사확인)
 나.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증명서(외국가기 직전의 국내 최종학력 증
명서)
 다. 국내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학기단위의 성적을 취득한
경우)
 라. 출입국 사실 증명서(부모, 학생)
 마.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
 바. 전·편입학 원서와 수험포 및 접수증 --- 첨부 4~5쪽
 사. 전·편입학 신청서 (특례자, 일반귀국자) --- 첨부 7쪽
 아. 서약서 --- 첨부 8쪽
 자.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첨부 9쪽
 차. 예방접종 증명서(지자체, 보건복지부 발행)
 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 **해당자만**
 (외국 영주 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
 파. 국내거소 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 **해당자만**
 (외국 영주 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
- 외국학교의 서류는 아포스티유 발급(영사관 인증) 생략 '14.8.22시행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된 외국학력인증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같음.
 ※단,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
- 영문 이외의 언어는 한글이나 영어로 공증을 받아야 함.

구 비 서 류 목 록

해당자별 구비서류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국민 (제2호가목)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나목)	북 한 이 탈 주 민 (제3호)	외국인(제2호다목)		일 반 귀국자	비 고
				부 모 두 가 외국인인 학생	기 타 외국인 학생		
외국학교 전 학년의 성적증명서	○	○		○	○	○	재학학년 및 재학기간 명시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증명서	(○)	(○)				(○)	최종 재학 년월일 및 최종 재학 학년 명시
출입국사실증명서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중 1인, 학생)	○ (부.모중 1인, 학생)	○ (학생)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발행
호 적 등 본				○ (가족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순수외국인은 호적 등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증명서
전가족 주민등록등본	○	○	○			○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영주권(시민권)사본 ◦말소된주민등록등본	(○) (부.모.학생)			○ (부.모중 1인, 학생)	○ (부.모중 1인, 학생)		재외동포자녀에 한 함
체류기간, 거주기간 확인서	○ (부.모.학생)						재외공관장발행,외 국 체류기간명시
유치과학기술자, 교수 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					주무부장관발급
제3국 수학인정서	(○)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부.모, 학생)	○ (학생)		출입국관리사무소, 동사무소
북한이탈 주민등록확인서			○				해당 행정구청장발 행
학력보증서			○				해당 행정구청장발 행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				해당 행정구청장발 행

<부 칙>

- 1) 본 규정은 1996년 4월 10일부터 적용한다.
- 2)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귀국자 자녀 및 외국인의 편입학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고등학생 전·편입학 규정을 준용하며 경기도교육청의 귀국자편입학 업무처리 안내 자료를 참고로 하여 전·편입생 선발관리 위원회가 심의하고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 2)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본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본 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본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고등학생 전·편입학 규정을 준용하며 경기도교육청의 귀국자편입학 업무처리 안내 자료를 참고로 하여 전·편입생 선발관리 위원회가 심의하고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부 칙>

- 1)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고등학생 전·편입학 규정을 준용하며 경기도교육청의 귀국자편입학 업무처리 안내 자료를 참고로 하여 전·편입생 선발관리 위원회가 심의하고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부 칙>

- 1) 본 규정은 2018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고등학생 전·편입학 규정을 준용하며 경기도교육청의 귀국자편입학 업무처리 안내 자료를 참고로 하여 전·편입생 선발관리 위원회가 심의하고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부 칙>

- 1) 본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고등학생 전·편입학 규정을 준용하며 경기도교육청의 귀국자편입학 업무처리 안내 자료를 참고로 하여 전·편입생 선발관리 위원회가 심의하고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부 칙>

- 1) 본 규정은 2020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고등학생 전·편입학 규정을 준용하며 경기도교육청의 귀국자편입학 업무처리 안내 자료를 참고로 하여 전·편입생 선발관리 위원회가 심의하고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부 칙>

- 1) 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고등학생 전·편입학 규정을 준용하며 경기도교육청의 귀국자편입학 업무처리 안내 자료를 참고로 하여 전·편입생 선발관리 위원회가 심의하고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부 칙>

- 1) 본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업무 시행지침(경기도교육청 2023.2.)을 준용하며 경기도교육청의 귀국자편입학 업무처리 안내 자료를 참고로 하여 전·편입생 선발관리 위원회가 심의하고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부 칙>

- 1) 본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업무 시행지침(경기도교육청 2023.2.)을 준용하며 경기도교육청의 귀국자편입학 업무처리 안내 자료를 참고로 하여 전·편입생 선발관리 위원회가 심의하고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귀국자 전·편입학(참고사항)

1. 학력 및 학년인정

(1) 학년배정은 외국학교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함.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에 외국학교의 재학기간을 합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함)

- 외국학교에서의 1~6학년 :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과정
- 외국학교에서의 7~9학년 : 우리나라의 중학교 과정
- 외국학교에서의 10~12학년 :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과정

(2) 9월 학제인 경우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 중복 시에는 귀국 후 국내학교 배정시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 시에는 국내학교 배정시 한 학기 내려서 학년을 배정함

[예1] 2009. 7. 20까지 국내 중학교 3학년(9학년) 1학기 재학
2009. 9. 1~2010. 6. 20 : G10 수료
2010. 9. 1~2011. 6. 20 : G11 수료
2011. 9. 1 : 국내학교 편입학 시 고등학교 2학년으로 배정됨
⇒ 학제 차이로 9학년 2학기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 월반하였으므로 국내편입학 시 월반된 한 학기를 빼서 11학년 1학기까지 수료한 것으로 인정하여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로 편입학

[예2] 2009. 7. 20까지 국내 중학교 3학년(9학년) 1학기 재학
2009. 9. 1~2009. 6. 20 : G9 수료
2010. 9. 1~2011. 6. 20 : G10 수료
2011. 9. 1 : 국내학교 편입학시 고등학교 2학년으로 편입학
⇒ 학제 차이로 9학년 1학기 과정을 중복 이수하였으므로 국내 편입학시 중복된 한 학기를 더하여 11학년 1학기까지 수료한 것으로 인정하여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로 편입학

(3) 외국에서 유치원, 어학연수(ESL), 개인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ESL반(과정)에서 정규교육과정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하고 성적이 산출된 경우에는 학력 인정이 가능함

(4) 외국학제가 10년~11년인 경우 외국에서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해당 학년에 편입학시킴

첨부

2. 외국의 학교과정 및 학교 인정 범위

(1) 외국의 학교과정 인정기준

- 가.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과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 나.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과정과 학년을 인정
 - 초등학교 과정 : 외국의 1 - 6 학년과정
 - 중 학교 과정 : 외국의 7 - 9 학년과정
 - 고등학교 과정 : 외국의 10 - 12 학년과정

(2) 외국학교 인정 범위

- 가.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 나.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3. 귀국자의 특례입학 관련 재학기간 문제(비연속일 때)

○ 고등학교 특례입학

- 초등학교 4학년 1년과 중학교 1년일 경우 특례대상자 아님
- 초등학교 4·5학년 2년과 중학교 1년일 경우 특례입학대상자임(중간에 공백이 있을 때는 3년간의 기간이 필요함. 단, 초등 1-3학년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고입특례는 외국에서 중학교 과정(7~9학년)중 일부가 포함되어야 함

○ 대학교 특례입학 : (참고자료임)

- 중학교 1학년 1년과 고등학교 1년일 경우 특례대상자 아님
- 중학교 1·2학년 2년과 고등학교 1년일 경우 특례입학대상자임(중간에 공백이 있을 때는 3년간의 기간이 필요함)
- 대입특례는 외국에서 고등학교과정(10~12학년)중 일부가 포함되어야 함
 - ※ 단 대입특례자격은 대학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 참조 또는 해당 대학으로 문의)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가목 해당자는 동일국가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재학한 경우만 인정하되, 부모 거주국의 지역, 종교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 제3국에서 재학한 자 및 재외동포 자녀는 예외로 인정

4. 특례대상귀국자의 외국에서의 거주 및 재학 기간

(1) 외국 거주·실체체류·재학 기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가목 해당자)

첨부

구 분	거주기간	실체류기간	재학기간	비 고
부 모	2년 이상	1년 이상	-	거주기간 및 실체류기간 동시 적용
자 녀	2년 이상	-	2년 이상	거주기간 및 재학기간 동시 적용

※ 외국의 학교에서의 입학수속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초·중
 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거주기간 또는 재학기간이 2년
 에서 미달된 때에는 고등학교 특례입학 자격심사 위원회(경기도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거주기간과 재학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음

5. 기타 사항

1. 북한이탈자의 편입학 학년배정은 “북한이탈자 편입학 관련 질의 회신”

(2002.3.12)에 의거하여 북한에서 수학한 연수에 따라 학력을 인정함.

- 국내의 초·중등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북한의 인민학교(4년제)와 고등중학
 교(6년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국내의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
 이수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함
- 북한의 고등중학교 3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는 국내 중학교 1학
 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과 동등하며, 북한의 고등중학교 5년의 교육과
 정을 이수한 경우는 국내의 중학교 3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과 동등한 학
 력을 인정함

※ 단, 학생·학부모가 연령에 맞추어 학년을 배정받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학
 칙에 의거,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에 의하여 적정 학년을 배정할 수 있음

2.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

첨부



전·편입학원서 (전·편입생용)

지원학년	학년	전공(세부전공)		수험번호	※ 기록하지 마세요(접수자 기록)	
지원자	성명		전형 유형	일반, 특례 유공자	성별	남·여
	주민등록번호					사진(3×4cm) 3개월 이내 촬영한 정면 사진 (수험표와 동일)
	연락처	학생 휴대전화				
		보호자 휴대전화				
주소(도로명)						
지원사유						

본인은 계원예술고등학교 전·편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보호자의 연서로 지원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_____ (인)

보호자 _____ (인)

재학중인 고교	학교명	고등학교			
	학년 반	학년	반	번	
	학교소재지				

위 지원자는 20 년 월 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합니다.

고등학교장 출신학교장
직인

계원예술고등학교장 귀하

첨부

수험표	
수험번호	※기록하지 마세요
성 명	
학 년	
전 공	
사진 (3×4cm)	
본교 직인	
계원예술고등학교	

접수증	
수험번호	※기록하지 마세요
성 명	
학 년	
전 공	
접수일자	
실기시험때 해당학과 사무실에서 수험표와 교환	
계원예술고등학교	

첨부

※ 고등학교 전·편입학 신청서(특례자, 일반귀국자) 작성요령

- 지원자의 학력 사항은 외국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에 의해 정확히 기재 하되, 초·중·고의 재학학년 및 재학기간을 모두 기재하고, 기간은 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 부모의 체류기간은 거주기간 내에 거주국에서 실제 체류한 기간을 기입 하고, 지원자의 체류기간은 거주국에서의 실제 체류기간과 제3국 수학 시 해당 수학국 에서의 실제 체류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기입
- 국내 학교과정에 해당하는 과정은 초·중·고 과정으로 구분 기입
- 첨부서류의 사본은 반드시 원본과 대조 후 “원본대조 필” “대조일” “대조자”를 기재하고 날인
- 서식의 ※표 란은 기재하지 않음

첨부

서 약 서

()고등학교 학년 지원전공:
(재학중인 학교) 이 름:

본인은 계원예술고등학교 전·편입학 지원자로서 전·편입학 후 재적교와의 교육과정 차이로 이수하지 못한 교과목 때문에 대학입시에서 있을 수 있는 어떤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보호자 연서로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학생: 인

학부모: 인

계 원 예 술 고 등 학 교 장 귀하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 전·편입학원서에 기재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전·편입학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제공됩니다.

1. (개인정보 처리의 법령상 근거)

본 전·편입학원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는 초·중등교육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82조, 제84조, 제98조, 제104조의7 및 본교의 전·편입학전형 실시계획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 (정보주체의 권리)

지원자는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열람·처리·정지·정정·삭제·파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수집항목)

전·편입학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증명사진, 주소, 전화번호, 학력, 출결사항·교과성적 등입니다.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원서접수, 지원자격·지원결격 사유 확인, 지원자 본인확인, 성적산출, 합격자 명부 관리 등 전·편입학관리 업무를 위한 정보로 이용됩니다.

5. (개인정보 제공)

수집한 개인정보는 지원자격·지원결격 사유 조회 및 교과성적 확인 등을 위하여 지원자가 졸업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등 관련된 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전·편입학관리 업무를 계속하는 동안 보유·이용할 수 있으며, 전·편입학관리 업무 완료 후 본인의 삭제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모두 삭제됩니다.

7.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

지원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결격 사유 조회 등 전·편입학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전·편입학원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지원자 성명 (인)

보호자 성명 (인)

계원예술고등학교장 귀하

Ⅲ. 학년결정 입학 시행 지침(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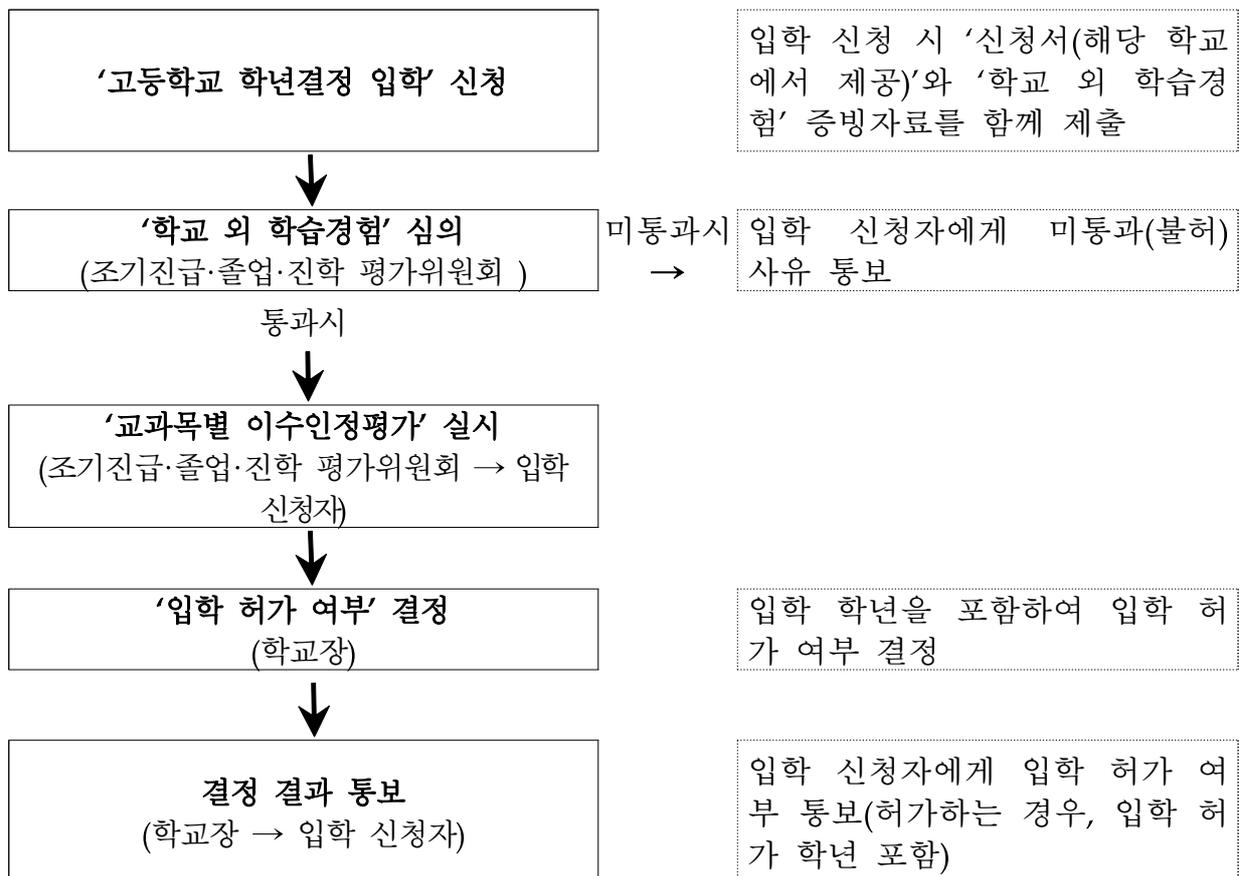
1. 관련 근거 및 절차

□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의 4(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제98조의4(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고등학교의 장은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제97조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신청인의 학교 외 학습경험에 관한 심의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입학할 수 있다.

○ 공포일/시행일 : 2010.2.26 / 2013.1.1

□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절차



첨부

- 가. 입학신청자는 해당학기 시작 20일전까지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신청서'와 '학교 외 학습경험' 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 재학(자퇴, 재적)증명서, 기타 합당한 증빙서류를 제출한다(입학신청서는 p.22 <붙임>서식 참고)
- 나.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학교 외 학습경험'을 심의한다(미통과자에게는 입학 불허를 통보한다).
- 다.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는 입학신청자에게 국내고등학생의 전·편입학 규정 제7조(평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다.
- 라. 전·편입학 규정 제7조(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장은 '입학 허가 여부'를 통보한다.

2.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신청 대상

- 가. 고등학교 학력인정 기관[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고, 산업체부설고(특별학급) 등]에서 1년 이상(단, 고2-2학기 이후 편입시 1학기 이상)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
- 나. 국내의 비정규 교육시설(대안학교, 직업훈련원, 대학/지방자치단체 부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내 교육기관, 사내대학,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에서 1년 이상(단, 고2-2학기 이후 편입시 1학기 이상)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
 - ※ 학원 등 사교육 관련 업체는 제외한다.
 - ※ 전·편입학이 상호 허용되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재학 중인 학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3.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심의 기준

- 가. 고등학교 학력인정 해당기관에서 1년 이상(단, 고2-2학기 이후 편입시 1학기 이상) 학습 시, 동일 기간에 해당하는 '학교 외 학습경험'으로 인정한다.
- 나. 국내의 비정규 교육시설(대안학교, 직업훈련원, 대학/지방자치단체 부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내 교육기관, 사내대학, 지역사회 공공기관

첨부

등)에서 학습학기 평균 13주 이상, 주 평균 20시수 이상에 해당하는 과정에서 학습 시, 동일 기간에 해당하는 '학교 외 학습경험'으로 인정한다.(※ 학기당 13주 미만 또는 주 평균 20시수 미만인 경우는 해당 주, 시수를 합산하여 심의 가능)

- 다. 허용 범위는 해당 학년의 정원 범위 내로 한다. 단, 학년결정 입학 신청일 당시 존재하던 정원이 학년결정 입학 허용 이전에 전편입학 등으로 채워진 경우, 정원의 전·편입 인정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 라. '학교 외 학습경험' 증빙 자료는 재학증명서, 이수(수료)증서 및 관련자료 등을 활용한다.
- 마.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절차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입학'한 경우, 해당 학생의 학적은 고등학교 2학년 편입학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NEIS 학적처리 포함)

4.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기준

- 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는 국내고등학생의 전·편입학 규정 제5조(평가 시기) 및 제7조(평가)에 의해 실시하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에서 판정한다. 단, 실기성적이 실기과락(60점미만)을 받은 자는 전·편입학을 불허할 수 있다.
- 나. 제출서류는 국내고등학생의 전·편입학 규정 제 10조(절차)와 동일하다.
- 다. 실기평가 등 근거자료는 해당 학생 졸업 후 1년 이상 학교에서 보관한다.

